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-1033호

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촉진 및 BF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
「2023년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사업」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
- 다 음 -

1. 대상 사업

- (사 업 명) 2023년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사업
- (사업내용)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터미널 시설개선* 등을 위한 설계·시공·사업관리 지원을 통해 BF 인증등급 취득 지원
 - * 예) 매개시설(접근로·장애인전용주차구역·주출입구), 내부시설(통로·계단·경사로·승강기) 위생시설(장애인 화장실), 안내시설(점자블록·안내설비·피난설비), 기타시설(매표소·승강장) 등
- (지원규모) 국비 최대 2억원/곳, 1~2곳 선정
 - * 대상지 개수 및 사업비는 전문가 실사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
- 터미널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·지자체 등이 사업비* 공동 부담
 - * (공영 터미널) 정부·지자체 50:50, (공용 터미널) 정부·지자체·민간 사업자 40:40:20
- (신청주체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 - 시외버스 운송사업자,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신청 가능
 - * 여러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·공공기관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대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함

2. 신청방법

- 제출 일 : 2023년 8월 28일(월) ~ 9월 29일(금), 18:00까지
- 제출장소 :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
- 제출방법 :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

- 다만, 아래 서류(원본 등)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

< 제 출 서 류 >

- ① 신청서 1부(지방자치단체장, 공공기관장 등 신청기관의 장 날인)
- ② 사업계획서 8부
- ③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파일 일체(USB 메모리стик 등에 저장)

3.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: 사업안내서 참고

4. 유의사항

-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(이후 도착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(044-201-4772, 38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첨】 2023년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사업안내서